

제 호

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

1. 기관·단체명:
2. 대표자:
3. 소재지(주소):

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
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
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